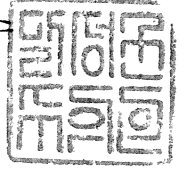


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200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1. 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2022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: 24,925천원
 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.2/10,000을 출연금으로 배정

3. 출연금 심의 요구서 : 따로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: 따로 붙임

5. 출연기관 현황 : 따로 붙임

출연 심의요구서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				
출연대상	○ 대 표 : 배진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서울 서초구, (인력) 정원 92명/현원 67명 (주요사업)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			
출 연 사 업 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24,925천원(군비 24,925천원)	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				
	구 분		사업기간	2021년 예산액	2022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
	합계			24,697	24,925				24,925	
	기관 운영비		1년	17,041	16,849				16,849	
	주요 사업비		1년	7,656	8,076				8,076	
	연구사업		1년	2,223	2,742				2,742	
	자치단체지원		1년	5,433	5,334				5,334	
출 연 필 요 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				
근거·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									
사업부서 의 건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.			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< 이사회 결산감사 >

-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, 학술행사,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, 특히 교육·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수행하였음.
- 외부감사인(안세회계법인)의 감사보고서에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,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, 연구과제 117건 수행, 지방세 교육(2,784명)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.

< 운영실적 평가 >

- 연구의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유형별 보고회 시행 등 평가방식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, 좀 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화하고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였으며 조직 슬림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,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분기별 환류 또한 필요함.
- 세부 사업별로 당초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 수준 초과달성한 사례가 많으나, 각 사업 단위별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운영 체계를 유연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.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.
-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,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,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.

③ 출연금 검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결산 지방세	2020년 결산 보통세 (C)	2022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
출연금	207,709,618	207,705,617	24,925	24,925	0	228

출연기관 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	전화번호 : 02-2071-2789	
	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	기관형태	출연	
인원현황 (2021년 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임시직·파견
	80명		67명 (원장1, 부원장1, 연구위원23, 연구원15, 관리직1, 전문직3, 사무직22, 시설직1)			13명 (위촉연구원2, 파견공무원9, 청사관리원2)
임원 (2021년 8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			임기
	이사장	백재현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2020.12.22. ~ 2023.12.21.
	부이사장	이동진	서울도봉구청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배진환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당연직
	이사	이우종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		당연직
	이사	김일용	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임재진	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신용식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박일동	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김미경	서울 은평구청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이항진	경기 여주시장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백선기	경상북도 칠곡군수			2021.2.28. ~ 2022.2.27.
	이사	유태현	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			2021.2.28. ~ 2022.2.27.
	감사	하종목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당연직
	감사	유희숙	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			2020.2.28. ~ 2022.2.27.
주요기능	-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77,237 (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9	2020	2021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0.12.31기준	19,680 (자산 총액)
	예산액	12,897	10,855	11,928		127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10,843	8,972	10,821		19,553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0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당기순이익
	12,504				9,816	2,688

1.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2.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3.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 1. 1만분의 1.2
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

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30994호, 2020. 9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)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.3으로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